

『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10월 10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10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10월 21일

제2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김 휴 진

나. 제안이유

구미시 장사시설이 2016년 9월 정식 운영됨에 따라 시설의 명칭을 구미시추모공원으로 변경하여 추모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신뢰감과 친근감을 조성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장사시설 명칭 변경(안 제2조, 제10조, 별표 1 ~ 별표 3)

당초 : 구미추모공원 → 변경 : 구미시추모공원

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○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(불임)

○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됨

○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불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신 정 순

○ 검토결과

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‘구미추모공원’을 ‘구미시추모공원’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추모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조성하고,
- 묘지·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·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자치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고,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